

外國의 製造物責任動向과 우리나라의 實態¹⁾

◀ 目 次 ▶

- I. 美國의 製造物賠償責任制度 現況
 - 1. 製造物 訴訟의 實態
 - 2. 製造物訴訟法理
 - 3. 製造物賠償責任制度 改革의 動向
- II. 日本의 製造物責任法 立法動向
 - 1. 製造物責任法 制定을 위한 各界의 勞力
 - 2. 同法에 대한 各界의 意見
 - 3. 製造物責任法案의 主要內容
- III.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制度 實態
 - 1. 經濟企劃院의 消費者保護施策
 - 2. 製造物責任保險의 現況

I. 美國의 製造物賠償責任制度 現況

1. 製造物 訴訟의 實態

'94년 현재 미식축구 등의 경기용 헬멧(헤드기어)의 主要 製造業者는 미국 전역에 2개사 뿐이다. 60년대만해도 18개 회사가 호황을 구가한 바 있지만 製造物訴訟費用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이탈, 2개사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중의 사고로 인하여 스포츠용구 생산자가 製造物 訴訟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미식축구 헬멧은 그 典型的인 예를 보이고 있다. 테클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반신불수가 된 소년에게 1400만불의 評決²⁾이 난 경우나 전신마비가 된 미식축구 선수에게 550만불의 判決이 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헬멧산업계는 86년에 이르러 실제로 生産費用을 상회하는 製造物 訴訟費用의 支出을 감당하지 못해 倒産했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2개사는 製品安全性 및 製造物 訴訟에 대한 신중한 대책으로 그 명맥을 유지시킨 기업이 된 셈이다.

세계최대의 아스베스토(석면) 제조업자인 맨빌 사는 「아스베스토 제조물소송」의 피고로 피해자 5만명에 대해 20억불에 달하는 배상금을 안고 도산(1982년)하고 말았다. 이른바 製造物訴訟倒産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아스베스토 제조물소송은 현재까지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으며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전체 600억불 이상의 費用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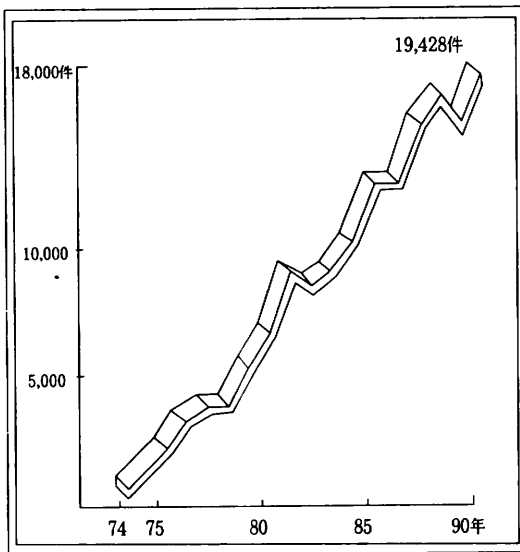
앞의 사례는 極端的인 예에 불과하지 모르지만

1) 본 자료는 조사연구실 차입권 대리, 가계보험부 이준섭, 지연구가 공동작성하였음.

2) 미국의 民事裁判에서는 事實認定(被告의 責任有無와 賠償額의 決定)은 일반시민중에서 선출된 陪審員의 合意에 따라 評決이 決定되고 여기에 기초하여 判事는 判決을 내린다. 다만, 판사는 評決의 內容이 顯著하게 不當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評決과 다른 判決을 할 수 있다.

製造物 訴訟은 일부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2,000개의 대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42%가 製造物 訴訟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47%는 실제 생산라인 중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증하는 製造物 訴訟件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聯邦地方裁判所에 제소된 소송건수는 '93년에 약 19,000건에 이르며 '74년에서 '90년의 16년동안 약 10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내 전체의 訴訟件數는 州地方裁判所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100만건을 上廻하리라 推算하고 있다.

〈그림-1〉聯邦裁判所の 製造物訴訟 提訴件數의 推移



訴訟件數의 増加뿐만 아니라 賠償水準의 急騰도 현저하게 나타나며 사망, 중상사고시 賠償額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체 소송건수중 賠償審理를 經유하여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약 5% 정도이며 대부분은 법정심리 이전에 합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해결을 포함한 통계는 없지만 1심의 賠償評決 수준과 그 추이를 보면 賠償金額의 急騰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결액의 중간값을 보면 '91년의 경우 약 46만불으로 賠償額이 점차 高額化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1〉 年度別 PL平均 評決額

연도	평결 PL소송건수		PL평균평결액(천불)	PL평균결액의 중간값(천불)
	100만 \$ 초과	전체		
1978	15	74	1,657	*
1979	34	109	761	*
1980	44	113	563	225
1981	61	235	801	340
1982	71	314	851	300
1983	96	379	1,246	300
1984	95	347	1,467	500
1985	97	305	1,091	550
1986	66	264	1,007	297
1987	69	264	863	265
1988	71	214	1,324	485
1989	89	325	1,058	400
1990	93	351	1,136	300
1991	76	234	1,346	464

출처: "Current Award Trends in Personal Injury",
Jury Verdict Research, Inc., 1993년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PL危機를 상징하는 巨額訴訟事例는 다양하다.

- ① 한 건의 사고로 巨額의 賠償金이 부과된 경우
 - 포드핀트 사건('78년): 1심평결 1억 2,850만불
 - GM 모스레이사건('91년): 1심판결 1억 520만불

- 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다수인 소송에 따라 賠償金과 訴訟費用이 거액이 된 경우
- 아스베스토소송 : 석면의 흡입에 의해 폐와 호흡기의 장애가 발생, 300개가 넘는 아스베스토 제조업자가 소송에 휘말려 최종적인 해결까지 600억불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 벤레트소송 : 농약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제조업자를 고소, 1,900건이 5억불의 배상금으로 해결되었으나 현재

400건의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RSI/CTD (Repetitive Stress Injuries/Cumulative Trauma Disorders)소송 : 장기간 키보드를 치는 작업을 계속한 종업원이 근육통 및 혈액순환장애 등의 장애를 입고 제조업자를 고소한 사건. 근로재해가 91년에 224,000건에 이르고 있으나 勤勞者災害補償의 補償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제조업자를 제조물피해소송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해짐.

(표-2)

主要 製造物責任 訴訟事例

제 품	사 고 내 용	배 상 액
자동차타이어	1993년 일리노이주의 지방재판소 판결 시속 55마일로 주행중, 오른쪽 앞바퀴의 펑크로 도로변의 고가 지주에 충돌, 운전사가 중상입음. 타이어제조업자를 고소함.	1심판결 평결액 : 1,100만불
트랙터	1993년 화해(미시시피주) 농부가 호수근처의 언덕에서 트랙터를 이용, 모래운반중 트랙터가 전복되어 압사함. 트랙터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를 고소함.	화해액 : 1,000만불
T.V. 타이머	1993년 화해(뉴욕주) 덜개가 떨어져 나간 타이머의 전기관통부에 2세 유아의 흉부가 접촉, 일시적인 심장정지에 의해 두뇌장애 발생. 타이머 제조업자 및 판매회사를 고소함.	화해액 : 2,700만불
좌석벨트	1993년 캘리포니아 주지방법 판결 승용차가 위법주차한 트럭과 충돌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9세 남아가 어깨벨트에 목이 걸려 산소결핍으로 뇌장해를 입음. 자동차 제조업자를 고소함.	1심 평결 평결액 : 1,500만불
실리콘(유방수술물질)	1992년 텍사스 주지방법판결 유방성형을 위해 실리콘젤을 주입한 후 염증과 통증호소. 실리콘젤 제조업자를 고소함.	1심평결 통상배상금 500만불 징벌적 배상금 2000만불
오토바이	1993년 펜실바니아 주지방법판결 오토바이 운전중 방향전환시에 전복되어 전신마비가 됨. 제조업자, 설계자, 판매업자를 고소함.	1심판결 평결액 : 1,970만불
옥외놀이기구	1993년 화해(워싱턴 DC) 10세의 남아가 수평사다리에서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머리를 다침. 놀이기구 제조업자를 고소함.	화해액 : 1,450만불

註 : 賠償額에 대해서는 評決이 난 후 和解하거나 抗訴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배상액은 確定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포드폰트 사건 이후도 自動車關聯 製造物訴訟에서는 高額賠償의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자가 1,000만불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2. 製造物訴訟法理

가. 嚴格責任理論(Strict Liability in Tort)

製造物 訴訟에 대해서는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嚴格責任法理」가 채택되고 있다. 엄격책임법리는 제품의 缺陷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供給者는 제조, 판매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法理이다. 전통적인 過失責任法理에서는 피해자가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複合産業構造上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엄격책임법리하의 피해자는 “製品の 缺陷有無”와 “그 缺陷에 따른 被害發生과의 因果關係”를 입증하면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엄격책임법리는 대중적인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라 被害者 救濟라는 社會的 要請에 응하여 형성되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량생산, 고도로 복잡한 생산과 유통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며 傳統的인 法理下에서는 被害者 救濟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판례의 누적에 따라 전통적인 법리를 수정해가고 있다.

過失責任에 있어서 “事實推定理論”의 채택,賠償責任과 관련하여 “契約當事者關係”의 완화 등 실질적으로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리가 형

성되고 '6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엄격책임법리를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65년에는 不法行爲法 Restatement³⁾가 작성되었다. 엄격책임법리하에서 피해자는 缺陷과 因果關係를 입증하면 기업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缺陷의 判斷基準”이 중요하며 前述한 不法行爲法 Restatement 402 조 A항에서는 “不合理한 危險(Unreasonably Dangerous)”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무엇이 불합리한 위험인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는 “一般消費者가 製品の 安全性에 대해 가지는 期待(The Expectation of Ordinary Consumer)”에 附合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消費者期待基準”, 제품의 효용과 위험을 비교하여 “危險이 效用을 上廻하는 경우(Risk Outweighs Utility)”에 결함을 인정하는 “危險效用基準”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준은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消費者에게 危險한가, 아닌가에 따른 平均的인 技術水準”과 安全基準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 또는 남용이 개재된 사고에 대하여도 기업측은 “豫測可能한 誤用 또는 濫用”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함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 陪審制度

실제의 재판에서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被告製造業者의 책임유무를 판단하는 행위는 일반시민 중에서 선출된 陪審員의 몫이며 이러한 제도가 제

3) Restatement of The Law-Second Torts는 美國法律家協會가 過去の 判例를 集大成하여 條文의 形式으로 整理하여 註釋을 단 것으로 法律은 아니지만 큰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

조업자에게 제조물소송 환경을 한층 엄격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陪審制度는 英美法 特有의 制度로서 일반시민중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법정심리 중 원고, 피고의 주장을 청취하고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가를 합의하여 판단하는 제도이다. 陪審員은 피고책임의 유무와 피고가 책임이 있는 경우 지불해야할 배상금의 규모에 대해서 원고, 피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배심원은 재판관과는 달리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넓지 않지만 한사람의 재판관에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偏見과 先入觀이 없는 일반인들의 공정한 판단이 民主主義에 부합한다는 논리에서 效用性을 가지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美國市民의 基本的인 權利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전술한 대로 陪審裁判에는 공정한 판단이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배심원들은 피해자측에 대한 同情이 앞서기도 하고 專門的인 知識의 缺如로 偏向된 判斷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법정심리에 심한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출정하기도 하고, 치료상황을 촬영한 비디오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정심에 호소하여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심지어 제조물소송에서 勝訴하기 위한 原告辯護士의 주요한 役割은 陪審員의 感情에 얼마나 呼訴하는가에 있기 때문에 연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缺陷과 被害의 因果關係證明”에 있어서는 통상의 지식수준을 벗어나는 專門的이고 科學的인 論爭이 이루어지나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배심원은 그 논쟁을 평가할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보다 과학적이어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 懲罰的 賠償金(Punitive Damages)

미국에는 通常의 損害賠償金(治療費와 慰籍料, 損失利益 等) 외에 加害者의 故意 및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懲罰的 賠償金(Punitive Damages)制度가 民事訴訟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加害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그러한 행위의 再發防止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고유의 제도이며 징벌적 배상금은 원고가 입은 被害額과는 무관하게 산출되고 금액적인 상한도 없기 때문에 被害者에 대한 同情과 被告製造業者에 대한 反感으로 쉽게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고측에서 實損害額과 관계없이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제기되며 이것이 賠償水準 急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의 포드핀트사건에서 1억2,850만불의 배심평결 중 1억2,500만불은 징벌적 배상금이다.

'75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51세의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追突을 당하여 연료탱크가 폭발한 사고로, 그 여자는 사망했고 동승했던 13세의 소년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측은 차량에 탑재된 연료탱크에 추돌에 의한 충격으로 쉽게 폭발하는 “構造的 缺陷”이 있다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주재판소에 포드사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동 제품의 판매초기 포드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대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고, 車輛改善費用과 사고발생에 따른 被害豫想額을 비교하여 개선을 하지 않은 점 등 포드사에게 불리한 내부자료가 노출되었다. 그 결과 '78년 2월 배심원단은 포드사에 通常의 賠償金으로 3백5십만불, 懲罰的 賠償金으로 1억2천5백만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포드사가 핀트가 위험한

缺陷車인 것을 알면서도 설계변경과 회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를 무시한 重大한 惡意가 있다고 인정, 節減費用을 1억달러로 계산하고 거기에 2천 5백만불을 가산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評決한 것이다. 이 사건의 最終 賠償額은 재판관에 의해 6백6 십만불로 감액되어 확정되었으며 당시 최대의 배상금액으로 화제를 모아 巨額訴訟의 象徵이 되고 있다.

라. 連帶責任法理과 Deep Pocket Theory

連帶責任法理(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하나의 不法行爲에 대해서 複數의 被告(加害者)가 성립되는 경우 原告(被害者)는 被告間의 責任比率에 관계없이 어느 피고에게도 배상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이 법리하에서 피고는 자기의 책임비율이 작아도 피해자로부터 전액을 청구받으면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資金力이 充分한 企業(Deep Pocket)이 消費者 被害를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며, 이는 제조업자를 한층 더 製造物訴訟의 標的으로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과실책임법리하에서는 자동차 충돌사고시 가해자인 운전자 외에 자동차제조업자에게 일정부분(예: 자동차제조업자 10%, 운전자 90%)의 過失責任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에게 충분한 자금력이 있으면 원고는 각각으로부터 책임액을 지불받지만 운전자에게 자금력이 없으면 배상액의 10%밖에 받지 못하나 연대책임법리하에서는 資金力이 있는 加害者(企業)에 배상금의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자금력이 없는 운전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해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

의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전혀 책임이 없는 때에도 제조물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고액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마. 成功報酬制度(Contingent Fee System)

成功報酬制度는 辯護士가 事件의 辯護로 獲得 가능한 賠償金의 一定比率(배상금의 30~40%, 일반적으로 1/3)을 報酬로 하는 制度이다. 사건의 인수시 先手金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지출하며 敗訴한 때에도 訴訟費用 등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제도에 따라 소송비용이 없는 피해자도 재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市民의 裁判받을 수 있는 權利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辯護士數의 過多”와 “값싼 訴訟費用”이 결합되어 訴訟의 多發과 巨額賠償請求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는 '93년 현재 약 85만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成功報酬制度를 기반으로 소송을 맡고 이를 통해서 一攫千金을 얻을 수 있는 고액의 청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지불하는 訴訟費用은 연방정부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불 정도이다.

바. 勤災事故와 自動車事故의 製造物訴訟 擴散

미국의 勤災補償制度는 州別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州는 勤災補償法(Worker's Compensation Law)에 기초하여 보험가입을 義務化하고 있다. 勤災保險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부가 주어지고 있으나 이 수준

이 매우 낮아, 死亡保險金이 2만불에 불과한 州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勤災補償法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근로자는 중복하여 사용자에게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單一給付의 原則(Sole Remedy Rule)”이 채택되어 재해보상액이 적어도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등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기계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사유로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가 無保險이거나 賠償資力이 不足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자동차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3. 製造物責任制度 改革의 動向

과거 2번에 걸친 “製造物責任危機” 또는 “保險危機”를 배경으로 미국에서는 제조물에 관한 소비자 및 판매자이익의 公平한 均衡提供,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不確實性的 除去를 위해 제조물 책임법리를 연방수준으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는 연방의회에서 “聯邦製造物責任法”이 상정되기도 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美國의 制度 改革法案은 미국 특유의 制度的 要因(懲罰的 賠償, 成功報酬制等)에 대하여 일종의 制動裝置를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며, 嚴格責任 등 제조업자의 책임원리를 변경하여 소비자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제102의회와 제103의회에 제출된 S640과 S687의 주요내용은 제조자이외에 판매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하는 동시에 卽決裁判制

度, 代替紛爭手續 등을 도입하여 제조물 사고시 “紛爭處理 費用”을 輕減하고 징벌적 배상,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聯邦基準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여러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科學的, 醫學的인 檢證에 基礎한 因果關係를 성립시킴.
- 連帶責任法理를 廢止함.
- 非經濟的인 損害에 대해 배상금을 制限함.
- 懲罰的 賠償金을 制限함.
- 將來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分割支給을 인정함.
-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 重複補償이 있는 경우 賠償金을 削減함.
- 변호사의 成功報酬를 削減시킴.
- 根據가 貧弱한 訴訟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賦課함.

한편 S640을 둘러싸고 上院 常務委員會의 호린그스 상무위원장 및 고어 상원의원(현 부대통령) 처럼 보험회사 자체의 放漫한 經營이 보험위기를 불러들였다는 주장하에 保險危機와 製造物責任制度와의 관련을 부정하고 제조물책임제도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쟁속에 무시정부는 現水準의 製造物責任負擔은 過度하며 미국의 海外競爭力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製造物責任制度 改革을 立法上 優先課題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한편 제조물 책임제도를 민사사법제도 일반에 관한 문제로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奎일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大統領 競爭力委員會는 民事司法制度全般에 걸친 개혁안으로 '91년 8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문가 증인 및 변호사 보수에 관한 敗訴者負擔原則 등을 중심으로 한 「美國 民事司法制度

改革에 관한 提案」을 발표했다. 그후 그 실현을 위한 연방법안이 '92년 2월에 의회에 제출되는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관한 각 주법에 대한 모델法案이 작성되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1991년 7월 하원에 제출된 바 있는 로란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販賣者에게는 엄격책임주의를 適用하지 않음.
- 배상청구자가 알콜 및 약물에 의해 50% 이상의 過失이 있는 경우 배상청구권은 상실됨.
- 배상청구자측의 誤用 및 改造가 있는 경우 危險負擔 상당의 금액은 청구액에서 삭감함.
- 징벌적 배상의 認定與否, 賠償額을 合理的으로 制限함.
-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법리를 적용하지 않음.
- 비경제적인 손해로는 精神的 苦痛, 名譽 및 信用의 毀損 등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基調는 클린턴의 신정부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으며 '93년 1월 22일 고어 부통령은 “競爭力委員會는 노동자, 소비자, 환경이익이 경제성장의 목표와 모순된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경쟁력위원회를 폐지했다. 현재 대통령 및 각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브라운 상무장관은 議會公聽會에서 제조물책임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證據에 대하여 充分히 檢討할 때까지는 明確한 立場을 취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축소하고, 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 「製造物責任公正法案」(S.687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93년 3월 상원

제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非經濟的인 損害에 대해서는 連帶責任法理를 부정함.
- 懲罰的 賠償金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嚴格하게 함.
- 資本財에 관하여 제조후 25년의 法定責任期間을 설정함.
- 原告에 대하여 Penalty를 排除함.
- 政府機關의 승인을 얻은 제조물에 대해서는 懲罰的 賠償金을 부과하지 않음. 식품의약품국(FDA)의 승인을 얻은 의약품, 의료가기, 연방항공국(FAA)의 인정을 받은 경비행기 등은 제조업자가 연방당국에 情報를 隱蔽하거나 不正確한 情報를 提供한 境遇를 제외하고는 懲罰的 賠償金 賦課를 禁止함.

II. 日本의 製造物責任法 立法動向

1. 製造物責任法 制定을 위한 各界의 勞力

일본에서는 스몬事件(피해자수 약 11,000명), 카네미油 中毒事件(피해자수 약 15,000명)등을 계기로 製造物責任法の 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75년 國民生活審議會가 소비자피해 구제의 주요 심의내용으로 제조물책임을 거론하자 일단의 학자 및 보험회사들이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공표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國民生活意識의 向上 및 消費者保護主義의 급속한 발전, 公的規制의 緩和에 따른 事業者의 自己責任原則 強化, 제품수입의 대폭적인 증가, EC지침에 의한 구미제국의 製造物責任 立法의 進展 등 國內

外 環境의 變化에 따라 政黨, 學會, 辯護士會 등을 중심으로 法案 및 立法提案이 잇따라 提出·公表되고 있다.

自由民主黨은 '92년 5월 경제물가문제조사회 산하에 제로물책임제도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결과를 동년 10월에 중간내용을 발표했으며 '94년 3월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가졌다. 또한 公明黨은 '93년 5월 衆議院 법무위원회에, 社會黨은 동년 6월 參議院 법무위원회에 각각 제로물책임법을 제출했다. '91년 12월에 열린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에서는 「國內外 經濟社會의 急速한 環境 變化에 對應하여 餘裕, 安心, 多樣性있는 國民生活를 實現하기 위한 基本的인 方策」에 대한 총리의 자문을 받고 소비자정책회의 주관하에 제로물책임제도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 긴급한 과제인 製造物責任制度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방지·구제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결과는 동 회의에서 '92년 10월 중간보고를 거쳐 '93년 10월 「綜合的인 消費者被害防止·救濟對策에 對하여」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동년 11월 25일 국민생활심의회는 총리에게 이와같은 검토결과를 반영한 「餘裕, 安心, 多樣性있는 國民生活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는 消費者被害에 관한 재판규범의 방향은 被害者 救濟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民事責任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의 요건을 行爲者의 行爲를 문제로 하는 過失에서 製造物의 狀態를 問題로 하는 缺陷으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사책임법의 변경은 그 필요

성,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더우기 산업계 등에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消費者被害防止·救濟策에 대하여 제품마다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계부처에 가전, 자동차, 식품, 약품 등 소관제품마다 消費者被害防止·救濟對策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에서는 관계부처의 검토성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책정하기 위해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로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방지·구제대책을 검토하여 1년이내에 그 결과를 종합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

이 일정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부처의 소관제품마다 민사책임법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被害救濟對策 및 賠償履行確保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통상산업부(가전, 자동차 등) : 산업구조심의회(통상장관의 자문기관 : '93.1~)
- 농림수산부(식품) : 식품에 관한 소비자피해방지·구제대책연구회(식품유통국장의 사적 자문기관 : '93.12~)
- 보건사회부(약품) : 중앙약사심의회 제로물책임제도특별위원회(장관의 사적자문기관 : '94.6~)

아울러 '94.1.19일 개최된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제1회 총회에서 소비자정책회의가 설치되고 製造物責任制度를 중심으로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

방지·구제대책의 試案整理에 부심하고 있다.

2. 同法에 대한 各界의 意見

'93.5.19 147개의 地方自治團體 議會는 地方自治法 제99조 제2항에 의거하여 「製造物責任法の 早期制定에 관한 意見書」를 경제기획청장관에게 제출했다.

經濟界에서는 '92년 5월 일본 상공회의소에 「제조물책임제도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關西經濟聯合會가 7월에 「종합적인 소비자피해예방·구제제도의 충실화를 위한 제언」을, 中部經濟聯合會가 9월에 「제조물책임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고서제출 후 12월에는 經濟團體聯合會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자주적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각 업계·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勞動界의 경우 日本勞動組合總聯合會가 6월에 「1992~93년도 정책·제도요구와 제언」에서 EC형 제조물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도록 제언하고, 소비자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은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연합회」를 조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위한 각종 운동을 주도하는 외에 「缺陷商品 110選」등의 행사를 통하여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75년 이래 논의되어 온 「製造物責任法案(PL法案)」을 '94.4.12에 내각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동 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의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被害者

保護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缺陷」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하면서 「推定規定」은 채택하지 않았으나 「開發危險의 抗辯⁴⁾」은 인정하고 있다.

3. 製造物責任法案의 主要內容

4월 12일에 국회에 제출한 「製造物責任法案」은 제1조-제6조 및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目的) 製造物の 缺陷으로 因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하므로써 被害者를 保護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성 향상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製造物」이란 製造 또는 加工한 動産을 말하며, 「缺陷」이란 당해 제조물의 特性, 通常 豫見되는 使用形態,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인도할 시기 및 그밖에 당해 제조물과 관련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通常 지녀야 할 安定性を 缺如한 境遇를 말한다. 「製造業者等」이란 ① 당해 제조물을 業으로서 製造, 加工 또는 輸入한 자, ② 자신이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서 姓名, 商號, 商標 그 밖의 標示를 한 자 또는 當該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誤認케 하는 성명등의 표시를 한 자, ③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한 형태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제조물에 實質的인 製造業者로 認定할 수 있

4) 製造業者가 제조물을 販賣한 時點의 科學이나 技術水準로는 當該 製造物の 缺陷與否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은 輕減된다는 논리.

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製造物責任)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侵害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제4조(免責事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등이 ①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가 引導한 時點에서 科學이나 技術水準에 비추어 당해 제조물이 缺陷이 있다는 事實을 認識할 수 없었거나(開發危險의 抗辯) ②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部品이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 缺陷의 原因이 전적으로 完製品製造業者의 設計上の 瑕疵로 인해 발생하고, 缺陷發生과 관련하여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負擔하지 않는다.

제5조(期間의 制限) 損害賠償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안 때로부터 10년이내에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된다. 다만, 身體에 蓄積되는 경우 健康을 해치는 物質에 의한 손해나 一定期間의 潛伏期를 거친 후에 비로소 症狀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제6조(民法의 適用)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에서 同 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법률의 시행후에 제조업자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

製造物責任制度의 法制화와 관련하여 國民生活 審議會 등에서 계속 檢討作業이 이루어져 왔기 때

문에 이미 '93년 후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심의회 등에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국민생활심의회가 '93년 12월에 보고서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消費者 被害를 救濟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III.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制度 實態

우리나라에서는 '82년 12월에 최초의 製造物責任法(案)이 제110회 臨時國會에 上程된 前例가 있다. 김순규의 25명의 의원이 發議한 동 법안은 製造業者의 無過失責任, 缺陷 및 因果關係의 推定, 過失相計의 特則, 損害賠償措置 및 保障事業 등 총 14개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90년 1월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消費者被害의 深刻性和 關聯法規의 整備, 세계 여러나라의 제조물관련법의 제정동향에 따라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을 작성하여 關連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 經濟企劃院의 消費者保護施策

경제기획원은 '92년의 第7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의 消費者保護部分施策에 이어 「'94 消費者保護綜合施策」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의 보완, 둘째로 소비생활관련 정보제공기능과 교육의 강화, 세째로 소비자 안전관리의 강화, 네째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다섯째로 소비자피해 구제기능의 강화, 여섯째로 효율적인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등으로 소비

자보호정책의 향후 청사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2년 발표내용에는 危害가 예상되는 製造物(예, 특수기능식품, 농약, 비료 및 농기계 관련제품 등)을 사업자단체 주관하에 被害救濟基金을 積立, 製造물의 결함으로 인한 被害者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危害多發品 또는 危害發生 憂慮가 큰 제품에 대하여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加入을 段階的으로 擴大實施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가스용기류의 義務保險加入 實施와 더불어 冷·暖房機具, 家庭用 電氣製品 및 醫療機具 등 危害發生 可能性이 큰 제품의 경우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의 도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94년 발표내용에는 이러한 맥락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사항은 消費者 訴訟支援制度의 運營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되고 제조업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변호인 추천 등 소송지원을 위한 訴訟支援辯護人團을 구성하여 운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多數의 共通利害關係者가 집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集團訴訟에 관한 法律」을 제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醫療事故紛爭調停委員會를 통한 調停前置主義의 채택, 의료분쟁조정기금의 설치 및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화하는「醫療事故紛爭調停法」의 제정을 可視化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製造物責任保險의 現況

외국과는 달리 국내 제조업체는 아직도 製造物

賠償責任保險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나 수출촉진등을 위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大韓再保險(株)에 따르면 '92년말 현재 生産物賠償責任保險 契約件數는 902건, 保險料는 47억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조물의 약 1% 정도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외국의 수출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체가 이처럼 보험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儒敎文化의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장려되지 않으며 消費者의 權利意識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구미각국에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체의 製造物責任保險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94년 5월 大韓貿易振興公社가 개최한「PL 說明會(미국의 변호사법인 CAMPBELL & ASSOCIATES 주관)」에는 제조업체의 실무자로 상황을 이루어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國內輸出業體가 PL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큰 피해를 보는 事例⁹⁾가 늘어남에 따라 韓國生産性本部(KPC), 韓國標準協會(KSA), 韓國能率協會(KMA) 등 국내 산업교육기관들은 '94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PL관련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開發, 事例發表會, 專門家 招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গুল지의 전자회사인 S전자는 '94년 6월에 자사의 전제품(추정금액 연간 2조5천억원)에 대해 補償限度額 1인당, 1사고당 10억원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가입하여 국내 전자제품의 信賴度를 제고하고 消費者保護運動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회사인 G사, D사 역시 동 보험의 가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過失責任主義에서 嚴格責任主義로 轉換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증대한다. 그러나 늘어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價格으로 轉嫁되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그 附加部分 즉, 엄격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自家保險을 영위하거나, 일반적으로 자가보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保險으로 危險을 轉嫁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의 보험제도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고려할 때 強制保險의 형태보다는 任意保險의 형태가 바람직하나 초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강제

보험으로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아울러 韓國消費者保護院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製造物責任法의 제정과 관련, 보험업계 나름대로 심도있는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법의 제정에 따른 被害保障의 確保方案으로 제시될 여러 經濟施設중 가장 유력한 제도인 保險制度를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제도를 時宜適切하게 再構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保險制度 改善의 한 방안으로는 製造物의 種類에 따른 科學的인 危險分類 및 料率算定프로그램의 整備, 外國約款의 追從에서 벗어나 國內實情에 맞는 保險約款을 構成하는 것 등이 우선 言及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 업체가 PL소송을 당한 최근의 대표사례로는 현대자동차의 안전벨트 관련소송(배상금 1,300만달러, '93.5), 주방용품 생산업체인 고려사의 전기오븐(보상요구액 6만달러), 신동아사의 가스라이터(배상액 15만달러)등이 있다.